KOSHA GUIDE

P - 167 - 2020

화학물질의 취급 및 시료채취 등에 관한 기술지침

2020. 12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- O 작성자: 전남대학교 장 희
- O 제·개정 경과
 - 2020년 10월 화학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
- O 관련 규격 및 자료
 - KS M ISO 3165, "화학제품(산업용)의 시료 채취 시료 채취의 안전성", 2011
 - KS M ISO 4257, "액화 석유 가스-시료 채취방법", 2011
 - KS M 2199, "방향족제품 및 타르제품의 시료 채취방법", 2007
- O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- 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(www.kosha.or.kr)의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동 지침 내에서 인용된 관련규격 및 자료, 법규 등에 관하여 최근 개정본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개정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: 2020년 12월

제 정 자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화학물질의 취급 및 시료채취 등에 관한 기술지침

1. 목 적

산업용 화학물질의 취급 및 시료채취 등에 따른 안전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화학물질의 취급 및 시료채취 등을 할 때 안전작업에 적용한다. 다만, 일부보건분야는 관련 기술지침을 따른다.

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- (가) "화학물질"이란 원소 및 원소간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생성된 물질을 말한다.
 - (나) "용기"란 고체, 액체 또는 기체의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직접 담은 강제, 플라스틱, 저장탱크, 유리, 비닐포대, 종이포대 등으로 된 것을 말한다.
 - (다) "시료 (Sample)"라 함은 대상제품에서 채취한 하나 또는 그 이상 단위의 추출 물로 대상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여겨지고, 그 대상제품에 대해 결 정을 내리거나 또는 그 대상제품의 생산과정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것을 말한다.
 - (라) "폭발성 물질"이라 함은 자체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주위 환경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온도·압력 및 속도를 가진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, 액체 또는 혼합물을 말한다. 다만 화공품은 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더라도 폭발성 물질에 포함된다.
 - (마) "산화성 물질"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의 연소를 촉진 하거나 연소에 기여하는 산화성 가스, 액체 또는 산화성 고체 등의 물질을 말한다.
 - (바) "인화성 물질"이라 함은 쉽게 연소되거나 마찰에 의하여 화재를 일으키거나 연

소에 기여할 수 있는 인화성 가스, 인화성 액체 또는 인화성 고체 등 연소할 수 있는 성분을 포함한 물질을 총칭한다.

- (사) "부식성 물질"이라 함은 화학적 작용에 의한 금속 부식, 인체 접촉 등에 의한 피부염, 자극을 일으키는 금속부식성 물질, 피부부식성 물질 및 피부작극성 물질 등을 말한다.
- (아) "독성물질"이라 함은 섭취, 피부접촉 또는 호흡기를 통하여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급성 독성물질, 호흡기과민성 물질, 흡인유해성 물질, 특정표적장기 독성물질 등을 말한다.
- (자) "방사성물질"이란 핵연료물질, 사용 후의 핵연료, 방사성동위원소 및 원자핵분 열생성물을 말한다.
- (차) "방사선"이란 전자파나 입자선 중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기를 전리(電離)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알파선, 중양자선, 양자선, 베타선, 그 밖의 중하전입자선, 중성자선, 감마선, 엑스선 및 5만 전자볼트 이상(엑스선 발생장치의 경우에는 5천 전자볼트 이상)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선을 말한다.
- (2)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주요 물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 및 「산업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에서 정의하는 바에 의한다.

4. 일반사항

- (1) 안전한 출입로가 있는 장소에서 화학물질은 취급하고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.
- (2) 적당한 조명과 통풍 시설을 갖춘 안전한 곳에서 작업하여야 한다.
- (3) 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시료를 채취(이하 "화학물질 취급"이라 한다.)하는 곳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하고, 주요한 내용을 현장에 게시하여야 한다.
- (4) 운반 중에 떨어지거나 운반설비나 다른 설비들에 의한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5) 화학물질 취급작업은 제품의 누출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.
 - (가) 유체의 시료 채취는 밸브를 통해 흘러나오는 유체의 양과 유속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.

- (나) 액체 시료의 경우에는 액체가 유출될 수 있음을 가정하여 유출된 액체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고 작업하여야 한다.
- (다) 액체와 기체 시료체취작업은 사고예방을 위하여 가능한 멀리 떨어진 안전한 곳에서 밸브를 조절하여야 한다.
- (라) 모든 시료를 채취할 때 적시에 밸브의 열고 닫힘을 조작하고, 확인하는 일은 작업자의 아주 중요한 책무이다.
- (6) 화학물질 취급작업은 시료채취 용기를 세척할 때는 세척 시 쓰이는 물질을 버릴 수 있는 알맞은 장소가 제공되어야 하며, 가스인 경우 시료 채취 및 그 주변 작업 자들의 작업장은 환기가 잘 되어야 한다.
- (7) 시료의 용기는 시료 용기가 깨짐으로써 발생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최적의 상태에서 운반하여야 한다.
- (8) 시료의 물리·화학적 성질과 화재, 폭발, 독성유무 등에 따른 고유의 잠재 위험성을 사전에 파악하여 안전대책 수립하고, 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. 예를 들어 벤젠은 발 암성 물질이며, 공기 중에 누출되면 화재, 폭발의 위험이 있고, 어는점이 5.5 ℃로 겨울철에는 유리병이 깨질 수 있다.
- (9) 작업자는 작업 전에 관리감독자에게 사전에 작업내용을 보고하고, 안전작업허가를 받아야 하고, 이상이 발생되면 즉시 관리감독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.
- (10) 필요한 이상으로 너무 크거나, 필요한 양 이상의 정도로 취급하여서는 안 된다.
- (11) 작업자는 위험한 물질의 특성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, 작업자는 안전을 위하여 누출시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준비, 적절한 소화기 비치, 보호구 착용 등의 사전 안전조치를 하고 작업을 하여야 한다.
- (12) 도구와 용기를 포함한 장비는 시료 채취 및 물질 운반 등에 적합해야 한다. 예를 들어, 시료 용기는 단단히 조여지고 압력 변화에도 견딜 수 있어야 한다.
- (13) 시료는 다른 화학물질들과의 화학반응을 막기 위해 다른 화학물질과 가까이 두어서는 안 된다.
- (14) 가능하다면 시료 채취 전·후 물질의 고유 특성과 시료 용기와 물질과의 화학반응 의 위험성을 알고 있어야 한다.

5. 화학물질 취급 및 시료채취 작업

- (1) 시료채취작업은 안전작업을 위하여 가능한 한 2인 1조로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.
- (2) 작업자는 응급상황 발생 시 우선 경고음을 울려야 하며 극한 상황이 아닐 경우 단독으로 모든 응급처리를 하고자 해서는 안 된다.
- (3) 심한 눈 손상성/눈 자극성 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장소에서는 눈을 보호하는 보안 경 등을 항상 착용하고 있어야 한다.
- (4) 시료를 취급하는 작업자는 시료가 나오는 밸브고장과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일어 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.
- (5) 작업자는 안전작업수칙과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.
- (6) 독성을 가지거나 위험한 물질을 시료로 취하려 할 때에는 안전작업을 감독하는 작업자 역시 시료를 취급하는 작업자와 마찬가지로 각 상황에서 해야 하는 행동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.
- (7) 만약 독성물질을 채취할 경우 작업자는 안전작업허가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, 조금이라도 이상한 경우 관리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.

6. 위험물질별 취급 필수 요구사항

화학물질의 위험성은 광범위하여 세부적으로 고려할 수 없으므로 4,5항에서 언급 된 예방대책과 함께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6.1 폭발성 및 유기과산화물질

- (1) 불안정한 물질은 물이나 알콜 등의 안정된 다른 액체 안에 보관한다.
- (2) 용기는 내용물의 손실과 용기 내 탈수를 방지하도록 만들어져야 하되, 용기의 폐 쇄는 압력의 변화에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되어야 한다.
- (3) 시료는 열이나 충격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, 시료의 손상이나 변질을 방지하도록 제작된 운반 수단으로만 시료를 운반해야 한다.
- (4) 유과산화물은 금속산화물 등의 이물질과 접촉시 급격한 분해반응에 의한 화재위

험이 있다.

- (5) 시료를 흘렸을 때는 그 즉시 보고하고,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.
- (6) 빛, 연기 및 스파크를 일으키는 장비에 노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.
- (7) 보안경과 보호의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.
- (8) 경보장치와 방화 장비의 위치를 알고 있어야 한다.
- (9) 폭발성 물질은 도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장소에 열쇠를 채워서 보관하여야 한다.

6.2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

- (1)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제의 대표적인 시료는 리튬, 칼륨, 황린, 알킬알루미늄, 알칼리금속, 유기금속화합물, 금속의 수소화합물, 칼슘 탄화물 등이다.
- (2) 산화성 물질, 물, 공기 및 화기와 접촉을 금지하고, 가열, 마찰 및 충격을 금지하여 야 한다.
- (3) 시료들은 누출되면 공기 중에서 습기와 반응하여 인화성 가스와 함께 발생하는 열에 의하여 자연발화를 일으킨다.
- (4)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여 인화성 가스와 다량의 열이 발생하여 자연발화 또는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.
- (5) 소량이 누출되면 다량의 물을 뿌려 진화할 수 있으나, 다량이 누출되면 물을 뿌리는 것을 금지하고, 모래 등으로 덮어 공기와 접촉을 차단하고, 주위로 확산을 방지하고, 다 탈 때까지 기다린다.
- (6) 석유 등의 용제 속에 밀봉하여 보관한다.
- (7) 통풍이 잘되는 건조한 실내에서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.

6.3 인화성 가스 및 액체

(1) 인화성 가스 및 액체의 대표적인 시료는 도시가스, LPG, 수소, 핵산, 아세톤, 휘발유, 등유, 경유 등이다.

- (2) 취급하는 장소에서는 화기, 불꽃, 마찰, 충격, 아크 및 고열체 등에 접근되지 않도록 하고, 증발시키거나 가열하지 말아야 한다.
- (3) 고압의 도시가스, LPG 등의 고압가스 시료는 내압력과 기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.
- (4) 화재발생 시에는 소화기 또는 폼 소화제를 사용하여 진화하여야 한다.
- (5) 시료는 통풍이 잘 되고, 그늘진 곳에 밀봉하여 화기가 없는 장소에 보관한다.
- (6) 유리 용기는 최대 15 ℓ를 초과할 수 없고, 플라스틱병은 사용할 수 없다.
- (7) 시료 채취는 정전기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속은 1 m/s 이하가 되도록 하고, 채취기는 바닥에 가능한 가깝게 하며, 금속용기는 접지하여야 한다. 만약 접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채취 후에 20분 이상 정체시켜 축적된 정전기를 완화시켜야 한다.
- (8) 시료 채취자는 제전복과 제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.
- (9) 액상의 고압시료는 누출시 기화열에 의한 동상의 위험이 있으므로, 보호장갑을 착용하여야 한다.
- (10) 눈에 묻으면 10분 이상 물로 조심해서 씻고,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.
- (11) 피부에 묻으면 오염된 모든 의복은 벗거나 제거하고, 피부를 물로 씻고, 피부 자극이 생기면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.
- (12) 폐기물은 별도의 금속용기에 담아 점화원이 없고, 가연성 물질이 없는 곳에 통풍이 잘되고, 직사광선을 피하여, 서늘한 곳에 보관하고, 당일에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.
- (13) 시료는 열로부터 보호되어야 하고, 파손 또는 유출되는 경우에는 시료를 안전하 게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된 용기로만 이송되어야 한다.
- (14) 다량의 시료를 보관할 때는 폭발위험장소로 구분하고, 안전하게 관리되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.
- (15) 시료 용기는 시료 채취 후 가능한 빨리 서늘한 곳에 두어야 한다.
- (16) 용기는 보호캡을 씌워서 보관 및 운송하여야 한다.
- (17) 수송 열차로부터의 시료채취는 불꽃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차량운행이 없는 상태에서만 실시하여야 한다.

6.4 산화성 물질

- (1) 산화성 물질의 대표적인 시료는 액체 공기, 산소, 산과 그 착염, 과산화수소 등이다.
- (2) 작업장 주위에는 가급적이면 가연성 물질이나 인화성 물질을 두지 말아야 한다.
- (3) 산화성 물질 소화에 적합한 소화장비를 비치하고, 화재시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(4) 산화성 물질을 운반하는 장비는 인화성 또는 가연성 물질 등과 함께 운반하여서는 안 된다.
- (5) 시료를 운반하는 장비는 불연성 재질이어야 한다.
- (6) 금속산화물, 빛, 연기 및 이물질에 접촉 또는 노출되면 안 된다.
- (7) 산화성 물질 취급에 적합한 보호구, 보호의 등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.
- (8) 적당한 소화장비의 이용이 항상 가능해야 한다.
- (9) 작업장의 산소 농도가 23.5 %를 초과하면 사소한 마찰, 충격 등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, 환기 또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취급하여야 한다.

6.5 경구 및 흡입 독성물질 일반사항

- (1) 독성물질의 일반적인 특징과 위험성 등은 다음과 같다.
 - (가) 대부분의 급성 독성물질에 중독되었을 때 즉, 단기간에 심하게 중독되었을 때 에는 그 즉시 이상증후가 나타난다.
 - (나) 그러나 몇몇 경우에는 이상 증후가 몇 시간이 지난 후에 나타나게 되므로, 이와 같은 모든 경우에 대해서 의학적인 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.
 - (다) 약한 독성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었을 때에는 독성물질이 신체 내에 축적되 거나, 미미한 생리적인 변화로부터 건강에 큰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, 이와 같은 경우 중독된 작업자는 지속적으로 의사에게 검진을 받아야 한다.
 - (라) 독성물질을 다룰 때에는 항상 자신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하고, 중독에 의한 징후와 그에 따른 의학적인 처치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.

- (마) 중독에 의한 징후가 늦게 찾아오는 경우에는 자신이 다루었던 물질을 처음으로 사용한 날짜와 이름을 기억하여 의학적인 조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.
- (바) 이런 의학적인 주의사항을 잊고, 독성물질을 다루게 되었을 경우에는 물질을 다루는 작업자는 독성물질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.
- (사) 작업자는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고,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가능한 밀폐상대 에서 시료채취 위치와 가능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하여야 한다.
- (아) 시료를 취하는 작업을 하는 작업자는 작업자의 안전작업을 감독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작업을 같이 해야 한다.
 - ① 안전작업을 감독하는 작업자는 시료가 있는 근처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해야 하고 작업 과정을 지켜보아야 한다.
 - ② 작업자는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법을 알고 있어야 하며, 응급 상황 발생 시 경고 장치를 작동시켜야 한다.
 - ③ 아주 급한 상황이 아니면 혼자서 응급 처치를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피해야 하다.
- (자) 시료가 나오는 밸브는 시료가 주위로 튀거나 흘러 나가게 하지 않도록 조작하여야 한다. 시료는 밸브와 가까이 위치하면 안 되고 천천히 조작하여야 한다.
- (차) 채취한 시료 또는 빈 용기는 운반이나 보관 중에 누출되지 않도록 잘 밀봉하여 안전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.
- (카) 시료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분실되었을 경우에는 관리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, 가능한 빨리 안전하게 회수·처리하여야 한다.
- (타) 용기에 담은 후 작업자는 깨끗이 몸을 씻고, 시료를 다루었던 장비 역시 씻어야한다.
- (파) 작업자가 입었던 옷이 오염되었다면 옷을 갈아입어야 하고, 오염된 옷은 오염 원이 옷에서 제거될 때까지 세탁소로 옮겨져서는 안 된다.
- (하) 비상조치 시에는 송기마스크, 공기호흡기 등을 착용하여야 하고, 공기정화 용량이 충분하지 않은 대피용 방독마스크를 착용해서는 안 된다.
- (2) 경구 독성물질의 일반적인 특징과 위험성 등은 다음과 같다.
 - (가) 낮은 증기압에서의 고체와 액체 물질은 호흡에 의해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게

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.

- (나) 독성물질 주위에서 물이나 음식 섭취, 흡연을 금지하여야 한다.
- (다) 모든 시료 용기와 도구는 제품에 쓰일 수 있도록 또 다른 세척이 필요 없게 충분히 씻어야 한다.
- (3) 흡입 독성물질의 일반적인 특징과 위험성 등은 다음과 같다.
 - (가) 일반적인 경우 기체와 휘발성 액체, 다른 독성 액체와 고체가 가루나 스프레이 형태로 이용될 때의 경우이다.
 - (나) 고체물질이 나노물질과 같이 미세하게 나누어진다면 이들은 호흡에 의해서 인 체에 피해를 입히게 된다.
 - (다) 산소결핍 위험이 있는 곳에서 시료채취 작업장은 환기가 잘 되어야 한다.
 - (라) 호흡으로 중독되는 독성물질을 들이마셨을 때에는, 산소마스크나 용기에 들어 있는 신선한 공기를 직접 들이마셔야 한다. 예를 들어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경우 산소마스크로 신선한 공기를 호흡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다
 - (마) 용기에 담긴 공기를 호흡하는 방법은 용기와 연결되어 있는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때, 마스크의 균열을 알 수가 없거나, 기체의 유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되면 안 된다.
 - (바) 시안화합물은 무취이고, 황산은 노출되자마자 거의 색을 띠지 않기 때문에 그 존재를 후각이나 시각적으로 파악하기가 힘들다.
 - (사) 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호흡에 의해 중독되지 않도록 예방책을 알고 있어야 한다.
 - (아) 흘린 시료는 관리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. 만약, 작업자가 입고 있던 옷이 오염되었다면 그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.

6.6 경피 독성물질

- (1) 피부와 접촉하여 반응하는 독성물질의 경우는 부식성 물질과는 구별되어야 한다.
- (2) 일반적으로 부식성 물질은 피부와 접촉하자마자 표피 조직에 손상을 입히고, 그 자체로서도 유해하다.
- (3) 반면에 접촉에 의한 중독물질은 표피에 즉각적인 손상 없이 피하 조직에 흡수되기

도 한다. 예를 들어 불화수소와 같은 물질은 피부부식에 의한 피해보다 접촉에 의한 피해가 더 크게 입힐 수 있다.

- (4) 경피 독성물질은 액체나 고체 상태로 피부에 피해를 입히고, 증기 상태가 되었을 때 호흡에 의해서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해야 하며, 이와 같은 물질은 흡입되면 중독될 수 있는 물질이다.
- (5) 액체와의 피부 접촉은 피하여야 하고, 시료 채취자는 손을 씻도록 한다.
- (6) 접촉에 의해 중독되는 독성물질을 취급할 때는 외부에서 오는 피해를 완전히 막아 낼 수 있는 적절하고 충분한 기능이 있는 보호복, 앞치마, 장갑, 장화, 보안면 및 방독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해야 한다.
- (7) 차가운 물과 따뜻한 물이 모두 나오는 세척설비 등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, 시료 채취 전에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.
- (8) 오염된 옷은 오염 즉시 제거해야 한다.
- (9) 시료를 취급하는 작업자는 시료가 있는 근처에서 안전작업을 감독할 수 있는 작업 감독자와 함께 작업을 같이 해야 한다.
- (10) 응급상황 발생 시, 검사하는 작업자는 대처해야 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하며, 응급상황 발생 즉시 경보 장치를 작동시켜야 한다.
- (11)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면 혼자서 응급 대처를 하려 하면 안 된다.
- (12) 시료가 나오는 밸브는 시료가 주위로 튀거나 흘러 나가게 하지 않도록 조작하여 야 한다. 시료는 밸브와 가까이 위치하면 안 되고 천천히 조작하여야 한다.
- (13) 모든 용기와 도구는 다른 제품과 같이 사용될 수 있도록 두 번 세척이 필요 없게 처음에 세척을 충분히 하여야 하며, 부가적인 세척이 필요할 경우 남은 독성물질 을 담을 수 있는 독성물질에 맞는 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.

6.7 부식성 및 자극성 물질

- (1) 강산, 강염기의 빠른 효과에 의한 위험성이 이 예에 속한다. 그러므로 어떠한 화학 물질이라도 피부와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.
- (2) 비교적 무해한 탄산나트륨 같은 경우도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에 주의하여 야 한다.

- (3) 접촉에 의한 경피 독성물질에 대한 예방책과 비슷하게 부식성 물질, 자극성 물질 의 예방책도 정해져야 한다. 특히, 경피 독성물질과 달리 강조될 점이 있다면 눈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보안경을 착용해야 한다는 점이다.
- (4) 부식성 물질 및 자극성 물질 등이 피부에 접촉된 경우에는 흐르는 물로 씻을 수 있도록 시료 작업장 근처에 세안설비, 샤워 시설 등을 갖추어 놓는다.
- (5) 작업 중에 부식성 및 자극성 물질에 의해 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,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고, 작업 중에는 작동시켜야 한다.
- (6) 추가적인 예방책은 6.6 경피 독성물질의 (5)에서 (13)까지 준용한다.

6.8 물리적 상태에 따른 위험 물질

- (1) 극한의 온도와 고압으로 노출되거나, 노출된 물질이다.
- (2) 일반적으로 극저온이나 매우 높은 온도에 있는 물질은 부식성 물질과 비슷한 위험성을 가진다.
- (3) 그 피해가 순간적이고 샤워 시설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가진다.
- (4) 온도에 따른 위험 물질은 다음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.
 - (가) 재료가 눈에 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눈을 보호하는 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.
 - (나) 고온의 물질에 대해서, 그것이 방출하는 고온의 열로부터 얼굴과 목 그리고 눈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.
 - (다) 물질을 다루기 이전에 손에 튀어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손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.
 - (라) 앞치마를 착용해야 하며 신발을 단단히 매어 물질이 신발 속으로 들어오지 못 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(5) 압력에 따른 위험 물질은 다음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.
 - (가) 시료를 다루는 장비는 고압 하에서도 시료의 유출 속도를 안전한 수치로 유지 되게 제어할 수 있고, 장비 자체도 유체의 유출에 의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배 치되어야 한다.

- (나) 시료가 주어진 압력 하에 노출되었을 때에도 시료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그 조건에 맞는 용기가 사용되어야 한다. 이때 용기는 검증 받은 것이어야 한다. 용기와 시료를 접촉시켰을 때에도 이러한 조건은 적용되며 그 상황에 맞는 도구를 이용한다. 그리고 작업자는 작업 전과 후의 안전성이 유지되도록 감독해야한다.
- (다) 시료를 담는 용기는 액체로 채워져야 하며, 최고 온도에서 액체의 부피가 전체 부피의 90 % 미만이 되도록 채워져야 한다.

6.9 방사성 물질

- (1) 방사성 물질은 오염 요소에 대처할 수 있고 관련 면허를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사람만이 다루어야 한다.
- (2) 어떠한 환경 하에서도 그 물질에 접근해서는 안 되고, 방사성 물질에 대한 사전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질 때까지는 그 물질을 다루어서는 안 된다.
- (3) 취급 작업 전 안전 필수사항은 다음과 같다.
 - (가) 예측할 수 있는 사태에 대한 예방대책과 행동 습득한다.
 - (나)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한다.
 - (다) 방사성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로 측정한다.
 - (가) 방사성 물질 앞에서는 흡연 및 음식물 섭취를 금한다.
 - (나) 오염 방지를 위해 장갑, 신발 및 옷 등의 방사성을 미리 검사해야 한다.
 - (다) 방사성에 의한 오염을 막고 오염이 되더라도 수용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오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후드, 장갑 등의 안전 장비에 대한 사전 검사가 필요하다.
 - (라) 원활한 호흡과 작업 시간의 연장을 위해서 물질과 작업자와의 거리 또한 생각 해 두어야 한다.
 - (마) 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리감독자는 오염원이 유출되었을 때 관련기 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.